

ENERGY INSIGHTS

KEEI / Biweekly

ISSN 1975-5023

주요 내용

[요약] 1

하일라이트

석유제품 선물상장시 주요 고려점 ... 3

바이오디젤의 합리적 보급방안 8

유전개발펀드의 특성과 과제 10

해외 에너지시장 동향 17

연구원 동정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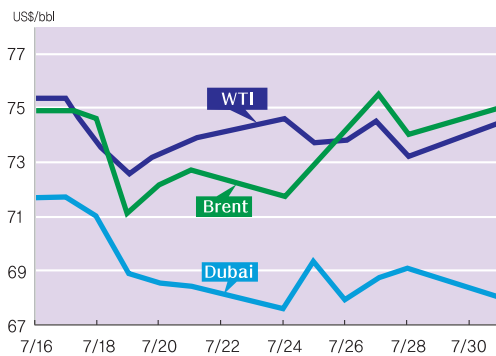
[요약]

석유제품 선물상장시 주요 고려점

선물시장을 성공적으로 국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정유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독립적인 상표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석유판매업자, 석유제품의 품질 보증능력을 보유한 사업자, 최종소비자들도 석유 선물시장의 중요한 참여자가 된다. 투기목적의 거래를 선호하는 시장 참여자도 필요하다.

특히, 근월물 거래가 활성화되어 선물시장 가격이 국내 석유수급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실물인수도 능력이 충분한 국내 정유회사들의 참여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싱가포르 석유시장과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틈새시장의 개발을 통하여 정유사 욕구충족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 TOCOM의 발전과정

국제 유가 추이



평균 가격 (7.16 - 7.31)

WTI	Brent	Dubai
73.97	73.57	69.08

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개장 예정인 중국의 상하이 석유거래소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국내 석유 선물시장의 도입조건을 세련시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바이오디젤의 합리적 보급방안

바이오디젤의 보급을 확대함에 있어서 어느 한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개선 효과만을 강조한 보급 확대는 공급의 불안과 공급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주유소에 직접 공급하는 유통방식은 유통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품질을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곤란하게 한다.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세제지원과 함께 생산주체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관련업체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시장이 일정규모로 증대될 경우에는 소비자 이익보호를 위하여 시장의 경쟁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유전개발펀드의 특성과 과제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해외유전개발사업에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전개발펀드 제도를 금년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현 제도하에서도 유전개발 투자를 위한 펀드조성이 가능하나 펀드투자자와 에너지자주개발 확대라는 자원안보와 연계하고, 고위험·고수익의 유전개발사업을 저위험의 안정도 높은 펀드로 일반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전개발 펀드제도가 필요하다. 투자자의 유인을 위해서는 유전개발펀드가 유전투자자와 다른 안정적 투자와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도록 하고, 동시에 강력한 조세유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주도아래 유전개발펀드 위험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나 시장조성도 요구된다. 유전개발펀드에 정부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공적 편익을 낳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기업들은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한 재원조달 및 사업 리스크 운용경험이 낮으나 이번 유전개발펀드 출시를 통해 자원개발과 금융과의 긴밀한 결합을 통한 자원개발 산업발전을 기대해 본다.

석유제품 선물상장시 주요 고려점

최근 국제유가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선물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격불안에 대한 대응수단중 하나로서 선물시장에서의 위험회피(Hedging)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 석유제품을 국내 선물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에 국내 석유시장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제도인 수평거래 금지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내 석유시장에서 확립된 유통질서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석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제 석유 선물시장 도입배경

1970년대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 및 가스에 대한 국유화조치를 취하기 전에 International Major들은 원유 및 석유제품의 가격불안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하였다. 상류부문과 하류부문간의 수직적인 통합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원유가격의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갔다. 석유제품 수급구조가 상이한 여러 지역의 하류부문에 진출하는 수평적인 연합관계의 구축은 석유제품 가격불안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수단이 되었다.

1970년대 이후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 및 가스에 대한 국유화조치를 취하면서 Major들의 상·하류부문간 수직적인 통합관계는 약화되었고 동시에 현물시장이 발달하면서 원유가격의 불안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 결과, 원유 및 석유제품의 가

격불안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선물시장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 선물시장은 Major들이 산유국의 협조없이 원유가격의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수단이 되고 있다.

국내 석유 선물시장 도입시 성공 요건

석유제품을 국내 선물시장에 상장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에 유의해야 할 점은 선물시장이 위험관리의 유일무이한 수단이 아니라 많은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위험관리의 수단으로서 선물시장 이외에 상류부문과 하류부문 간의 수직적인 통합관계 구축, 수평적인 연합관계 구축, Swap거래 등이 있다. 국내 정유회사들이 석유제품을 다양한 국가들에 수출하는 것은 석유제품의 가격불안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수평적인 연합관계 구축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곧 선물거래의 필요성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선물거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국내 석유 선물시장의 도입 필요성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석유 선물시장의 도입을 위하여 국내 선물시장이 해외 선물시장에 비하여 우월성 내지 차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내 선물시장이 해외 시장과의 차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정유회사들이 해외시장이 아닌 국내 선물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국내 석유 선물시장이 싱가포르 석유시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우월성이나 장점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미 싱가포르 석유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위험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내 정유회사들의 참여를 유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성공적인 석유선물시장 도입의 관건인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동경선물거래소(TOCOM)

가 정유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서 침체되어 있는 현 상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 석유 선물시장 도입시 기대효과 불투명

석유제품을 선물시장에 상장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면밀한 판단도 필요하다. 우선, 국내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여부에 관한 것이다. 석유선물시장이 안정성과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근월물 거래가 활발하여 국내 석유제품의 수급 상황이 선물가격에 적절히 반영될 경우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안정성과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투기성 거래인 원월물 거래 위주의 선물시장이 운영될 경우에는 국내 석유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지 못한다. 오히려 시장불안을 야기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선물시장의 도입이 국내 석유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분석도 필요하다. 석유선물시장이 안정성과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근월물 거래가 활발하여 국내 석유제품의 수급 상황이 선물가격에 적절히 반영될 경우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안정성과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투기성 거래인 원월물 거래위주 선물시장이 운영될 경우 시장혼란을 촉발하면서 Predatory Pricing이나 Windfall Profit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석유 선물시장이 현행의 석유 현물시장을 끌어 들일 수 있을 지에 대한 면밀한 판단도 필요하다. 국내의 현행 석유제품 현물시장의 장점은 잉여 공급물량을 해소하는 데에 있다. 반면에 선물시장은 이러한 장점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을 끌어 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수평거래 허용시 주요 문제점

석유제품의 국내 선물시장 상장과 관련하여 수평거래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수평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유통 채널을 통하여 구입하는 석유제품의 가격보다 선물시장을 통하여 구입하는 석유제품의 가격이 저렴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 거래행위를 촉진시킬 경우 정상적인 유통채널보다는 선물시장을 통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유인이 나타나고, 따라서 국내 석유제품 유통질서가 크게 교란된다.

이는 국내 석유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석유제품 공급자를 불확실하게 하여 불량 석유제품의 유통을 통한 소비자 이익의 침해가 초래될 것으로 분석된다.

본 수평거래 허용 요구는 그 성격상 현행 현물시장에서 구입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수평거래를 허용하라는 요구와 동일한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독립적인 풀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선물시장에서 구입한 석유제품은 다른 판매업자와 거래할 것이 아니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이것이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평거래 금지 규정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석유제품 유통단계 및 거래의 회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유통비용 및 유통마진의 절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최종소비자 가격의 최소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1998년 1월부터 정유회사와 주유소 간에 직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수평거래를 선물거래에 대하여 허용할 경우 이 석유제품 유통단계 및 거래의 회수를 최소화하여 소비자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존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선물시장 참여를 통하여 저렴한 가격의 석유제품을 구입한 시장 참여자와 그렇지 못한 시장 참여자간에 불신이 야기된다. 석유 선물시장에 나오는 석유제품은 잉여 물량으로서 변동비만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상적인 유통채널을 통하여 공급되는 가격도 이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유통업자들이 정유회사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으로서 국내 석유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과도한 가격인하 경쟁을 촉발하면서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교란시킴으로써 국내 석유산업의 구조를 취약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신중한 접근 필요

석유제품 선물시장을 성공적으로 국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정유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독립적인 상표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석유판매업자, 석유제품의 품질 보정능력을 보유한 사업자, 최종소비자들도 석유 선물시장의 중요한 참여자가 된다. 투기목적의 거래를 선호하는 시장 참여자(예: 대규모 Fund 운영자, 금융기관)도 필요하다.

특히, 근월물 거래가 활성화되어 선물시장가격이 국내 석유수급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실물인수도 능력이 충분한 국내 정유회사들의 참여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싱가포르 석유시장과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틈새시장(Niche Market)의 개발을 통하여 정유사 욕구충족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일

본 TOCOM의 발전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개장 예정인 중국의 상하이 석유거래소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국내 석유 선물시장의 도입조건을 세련시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복재(bjlee@keei.re.kr)

바이오디젤의 합리적 보급방안

우리나라 석유공급의 중동의존도가 80% 수준에 이르면서 에너지공급원의 다원화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화석에너지 소비증대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지구온난화 문제는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에너지원의 다원화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정부는 바이오디젤(Bio-Diesel, 대두유, 유채유, 정제 폐식용유를 원료로 하여 제조)의 보급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정부는 2002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수송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20% 혼합한 BD20을 수도권과 전북지역에 시범적으로 보급하였다. 이때에 BD20은 일반적으로 바이오디젤을 최대 20%까지(즉 20%이하) 혼합한 연료를 지칭한다. 이 기간 동안에 BD20을 시범보급한 결과 동절기에 차량필터의 막힘, 시동불량, 주행중 엔진 정지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정부는 국내 정유사들과 바이오디젤 공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바이오디젤을 최대한 5%까지 혼합하는 BD5의 공급을 시작하였다. 우선 시발점으로서 바이오디젤 0.5%를 혼합한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전

술한 문제점과 같은 바이오디젤의 품질상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국내의 바이오디젤 최대 공급능력이 연간 9만kl로서 이는 수송용 경유 연간 소비량의 0.5%에 해당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0.5% 혼합연료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수송용 경유의 품질과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합당한 것이다. 향후 바이오디젤의 시장수용성이 확대되면서 점차 그 혼합비율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디젤을 보급함에 있어서 공급과 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환경 개선 효과를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통의 효율성과 보급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료인 대두유나 유채유를 국내에서 공급함으로써 농업부문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평가되어야 한다. 이 때에 수입산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된다. 그러나 생산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지원하여, 농한기 국내에서 유희농지에 유채를 재배하여 유채유를 공급하는 경우 외화를 절약할 수 있고, 농촌의 수입증대를 꾀할 수 있다. 유채재배 시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을 경우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바이오디젤을 휘발유나 경유와 같이 수송용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 교통세와 교육세 그리고 주행세는 물론이고 이들 세금부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들 세금을 합하면 1ℓ 당 약 540원이 되는데, 이는 1kl당 54만원이 됨을 의미한다. 0.5%의 바이오디젤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간 9만kl가 소비되고 따라서 486억원의 세수감소가 연간 발생한다. 수송용 경유에 5%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4,860억원의 연간 세수감소가 초래된다.

바이오디젤의 보급을 확대함에 있어서 어느 한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개선 효과만을 강조한 보급 확대는 공급의 불안과 공급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주유소에 직접 공급하는 유통방식은 유통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품질을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곤란하게 한다.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세제지원과 함께 생산주체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관련업체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시장이 일정규모로 증대될 경우에는 소비자 이익보호를 위하여 시장의 경쟁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김정완(jwkim@keei.re.kr)

유전개발펀드의 특성과 과제

금년 하반기 유전개발펀드를 발행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민간부문의 풍부한 유동성을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유인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주개발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목표한 원유 및 가스의 자주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3년까지 160억~200억 달러 이상의 투자액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연간베이스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 해외 석유·가스개발 투자규모보다 2~3배 이상 더 투자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투자자금은 기업 스스로의 노력

에 의해 조달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기업규모가 거대한 국제 석유자본과 경쟁하기에는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기업이 성숙하기전 까지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촉진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를 통해 탐사사업에는 성공불 용자를, 그리고 개발, 생산사업에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용자하여 왔고, 최근 수년간은 다른 예산에 비해 비교적 높은 증가율로 해외자원개발 정책지원 예산을 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재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전개발펀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펀드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을 모아서 거액의 투자자금을 조성해 유가증권이나 실물자산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금융상품이다. 소수의 계약형 펀드(투자신탁)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장에서 유통되는 펀드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형태의 상법상 주식회사, 혹은 합자회사이며 법적으로는 “투자회사(공모형)” 혹은 “투자전문회사(사모형)”라 칭한다. 2005년 말 현재 204조원 규모의 펀드들이 금융시장에서 유통되었으며 펀드의 종류도 증권 및 채권펀드, 파생상품 펀드,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등 다양하다.

펀드는 자율적으로 조성되지만 금융상품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만약 아무나 펀드를 모집할 수 있다면 투자자들, 특히 소액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발행되는 거의 모든 펀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법은 펀드의 종류를 규정하고, 각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며, 펀드발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자산운용사, 판매회사 등 펀드발행 및 판매

자들의 역할과 의무, 금융 당국의 감독방법 등을 방대하게 규율하고 있다. 유전개발 투자를 위한 펀드는 실물자산 펀드의 하나로서 현 간투법하에서도 얼마든지 조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전개발펀드라는 별도의 제도를 만드는 이유는 해외유전개발 투자펀드를 에너지 자주개발 확대라는 자원안보와 연결시키기 위해서이다.

우리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의 유전개발사업에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한다면 투자자는 이를 통해 수익실현이 가능해도 자원안보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유전개발펀드는 반드시 해외유전개발 투자대상을 우리나라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한하고 있다.

별도의 유전개발펀드 제도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고위험, 고수익의 유전개발사업에 전문 기업이 아닌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저 위험의 안정도가 높은 펀드로 구조화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화는 현 간투법의 규정으로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유인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해외에서의 유전개발사업은 통상 해외투자가 안고 있는 환위험외에 국제유가 변동의 높은 불안정성으로 인해 미래 수익률 예측이 매우 불확실하다. 이러한 사업특성을 가진 유전개발사업에 투자자를 유인하려면 유전개발펀드가 유전개발사업외에 다른 안정적인 투자와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러나 펀드의 안정화를 위해 유전개발사업 투자비율을 너무 낮춘다면 펀드조성을 통한 유전개발사업 투자확대라는 당초의 펀드도입 취지가 희석될 수 있어 펀드조성액중 상당비율 이상을 유전개발투자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투자만으로는 유전개발펀드의 안정화가 어렵기 때문에 조세특례를 통해 유전개발펀드의 수익률을 향상 시키는 정책적 지원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환헤징이나 유가헤징, 보험가입 등을 통해 유전개발 사업이 갖는 여러 가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회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혜택을

통해 위험회피 비용으로 인한 펀드의 수익률 하락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유전개발사업은 장기간 사업이 운영되어야하나 일반 투자자들은 장기 펀드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조세유인이 필요하다. 이미 선박펀드나 부동산펀드 등 일부 실물펀드에도 조세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유전개발 사업의 투자위험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통상 선물시장을 이용하여 유가변동 위험을 헤징하는 경우 최장 만기가 3년 이내인 반면 유전개발펀드는 장기간 존속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월(roll over)을 통해 장기간 헤징이 가능하나 이월시점에서 여전히 유가변동 위험에 노출된다. 장외시장에서의 선도거래(forward contract)를 통한 헤징도 가능하나 거래 상대방을 수월하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장기 보험을 통해서 위험을 낮출 수도 있으나 상업적 보험기관은 유전개발펀드의 예상 수익률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고액의 보험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장기 위험회피에 대한 난점들은 유전개발펀드 조성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애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유전개발펀드의 투자위험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금융산업의 미발달로 다양한 위험, 특히 유전개발의 위험을 거래할 수 있는 파생상품 시장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정부가 공적기관을 통해 유전개발펀드와 위험을 거래하는 투자보증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겠다. 이 사업은 펀드가 만기시 잔존 자산을 투자원금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를 공적 기관에서 매입하는 반면, 공적기관은 유전개발펀드 수익의 일정부분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만기시 자존 자산의 가치가 약정된 금액 이상이면 펀드 투자자는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없고, 그 보다 작을 때는 권리행사를 통해 약정된 금액을 공적기관으로부터 받음으로서 투자자는 원금손실의 위험을 완화시키게 된다. 공적 기관은 위험보증의 대가로 펀드수익의 일정부분을 받게 되며, 만약 펀드가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순 수익만이 존재하나, 권리행사시는 약정금액이 그동안의 수익보다 크면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 투자보증산업은 초기에는 공적기관에서 추진하지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과 함께 유전개발펀드가 활성화된다면 민간이 참여하는 자원개발 관련 리스크를 거래하는 파생상품 시장의 형성도 기대해 본다.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유전개발펀드에 조세특례나 투자위험 안정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유전개발펀드의 조성이 곧,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공적 편익(public benefit)를 낳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석유수입국들도 자원공급의 안정이라는 공적 편익 때문에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CNPC 등 국영 기업을 통해 무차별적인 유전매입에 나서고 있으며 일본도 공적 기관인 JOGMAC이 기업의 탐사사업에 최고 50%까지 출자하고 생산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50%까지 금융기관에 대해 기업용자를 보증해주는 채무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준 메이저급의 거대 석유개발 기업을 갖고 있는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 유럽의 주요 석유수입국들도 석유개발기업이 지금은 민영화되었지만 '90년대 초반까지는 국영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해외자원개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실시해 왔다.

유전개발펀드도 금융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록, 우리나라의 자원개발이 확대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유전개발펀드를 매입하도록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펀드는 그 속성상 원금이 보장되는 채권과는 다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수익, 또는 손실의 발생은 투자자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정부의 역할은 유전개발펀드에 대한 투자안정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 조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유전개발펀드는 공모형, 또는 사모형으로 조성될 수 있다. 현 간투법의 규정에 따르면 펀드의 투자자가 30인 이상, 혹은 그 이하에 따라 전자는 공모형, 후자는 사모형으로 구분된다. 한편 같은 유전개발사업이라해도 사업특성의 차이가 크며 특히 탐사사업과 개발·생산사업은 위험도나 수익률 측면에서 그 특성이 매우 다르다. 탐사사업은 실패확률이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비가 소요되고 성공시 고수익을 얻게 된다.

개발·생산유전의 매입은 사업실패 확률이 낮은 반면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고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법적으로 강제할 것은 없지만 공모형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중심으로 안정도가 높은 개발·생산사업에, 사모형은 소수 전문 투자기관 중심의 탐사사업에 주로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모형 펀드는 PEF(Private Equity Fund, 사모투자전문회사)형태로 조성됨이 적절할 것 같다.

PEF는 투자사업에 대한 거래협상, 조사 등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자들에게 투자성사시의 출자약속(capital commitment)을 받아놓고, 사업이 성사되면 출자요청(capital call)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입찰이나 협상기간이 길어 사업성사가 불투명한 유전개발 사업에 적용하기 걱정된 펀드구조이다. 또, 자산운용사만이 펀드를 조성, 운용할 수 있는 공모형이나 다른 일반 사모형 펀드와는 달리 PEF는 능력있는 기업이면 펀드조성과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석유개발기업이 직접 펀드

를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 간투법하의 PEF는 주로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위한 펀드구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유전개발 사업에 적절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금년 하반기부터 출시될 예정인 유전개발펀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펀드의 구조뿐만 아니라 발행 당시의 금리, 유동성 규모 및 금융시장 동향, 그리고 경쟁펀드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지속적인 유가상승과 유전확보 경쟁이 심화되어 유전매입가격이 크게 상승된 점도 유전개발펀드 조성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상황도 중요하지만 펀드조성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 투자자의 관심을 유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유전개발 관련 금융상품을 운용한 경험이 거의 없어, 당장은 유전개발기업과 협력하여 유전개발펀드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원개발기업들도 아직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한 재원조달 및 사업 리스트 관리 경험이 낮다. 따라서 유전개발펀드 출시를 통해 자원개발과 금융과의 긴밀한 결합을 통한 산업발전을 기대해 본다.

정우진(wjchung@keei.re.kr)

해외 에너지시장 동향

대만의 고유가 관련 대응 정책

가. 2006년 1/4분기 에너지 수급동향

- 대만의 2006년 1/4분기 에너지소비량은 25,563천 KLOE(킬로리터 석유상당량)로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하였고 에너지공급량은 31,782천 KLOE로 전년 동기대비 0.6% 감소하였음.
- 에너지소비량(25,563천 KLOE)중에서 공업부문 58.0%, 운수부문 16.0%, 주택부문 11.6%, 상업부문 5.8%, 농업부문 1.1%의 순임.
 - 공업부문소비는 전년동기대비 2% 증가하였으며, 이중 전자전기분야가 IT 제품소비 증가에 힘입어 17.6% 증가하였으며 석유정제업은 일부 공장의 점검 수리에 따라 5.5% 감소, 철강업은 아시아 철강가격 상승, 국내 수요 회복에 힘입어 0.6% 상승. 상업부문은 4.0% 증가, 주택부문은 1.2% 증가, 농업부문은 23.4% 감소함.
- 에너지공급량(31,782천 KLOE)중에서 석유가 53.3%, 석탄 및 석탄제품이 31.4%, 원전이 7.5%, 천연가스 6.4%, 수력발전 1.4%의 순이며, 총 에너지중에서 수입에너지 비중은 98.2%이고, 자체 생산에너지 비중은 1.8%임.
- 대만은 2005년부터 금년 1/4분기까지는 물가안정 정책을 우선시하여 국내유가·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 인상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국내 유가 인상 허용(4월 19일), 전기요금 인상 허용(4월 29 발표, 하반기 시행 예정) 등 에너지 가격인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억제 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해외유전 개발 및 산유국과 합작으로 석유화학 정제공장 건설 등 에너지 공급 확보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나. 대만정부의 국내유가 인상 허용

-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4분기까지 대만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국영회사인 中國石油의 석유판매가 인상을 통제하였으나, 4월 19일에 유가인상을 허용하고 中國石油의 자율적 유가인상을 통한 소비절약 유도로 정책을 전환함.
 - 국영회사인 中國石油가 대만 석유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中國石油의 석유 판매 가격 인상 통제를 통해 국내 석유 가격의 관리가 가능함.
 - 대만정부는 국내유가 10% 상승시 소비자 물가는 0.39% 포인트 상승하고, 경제 성장율은 0.25%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다. 전기요금 인상 허용 추진

- 대만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대만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4월 29일에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여 하반기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
 - 전기요금 10% 상승시 소비자물가는 0.37%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

라. 해외유전 등 에너지확보 전략

- 中國石油, 臺灣電力 등 국영기업을 통한 해외탐사, 현지광산에 대한 직접투자, 산유국과 합작으로 석유화학정제공장 건설 등의 방식으로 석유 등 해외자원 확보를 추진.
 - 中國石油는 2005년에 28억NT\$(약 900억원)의 원유탐사 경비를 확보하고 앙골라, 나이지리아, 차드 등에 평가 진행.
 - 아랍에미레이트와 합작으로 석유화학 정제공장의 건설을 추진.
- 원유가 풍부하고 국교가 체결된 아프리카 우방국가와 석유탐사 및 개발을 추진하여 에너지 확보와 외교 이익을 결합하여 추진(산업자원부 해외상무관 보고자료).

홍콩의 고유가 관련 대응 정책

가. 고유가에 대한 홍콩정부의 인식

- 홍콩 경제는 서비스중심경제로서 석유 의존도가 낮아 고유가가 홍콩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간접적으로는 유가의 지속적 인 상승이 주요 교역상대국의 성장 둔화로 인한 대외교역 감소를 우려.

나. 고유가가 홍콩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

- 정부는 유가 10불/배럴 상승시 연평균 GDP 상승률을 0.6%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
- 유가 10불/배럴 상승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2% 상승할 것으로 추정.

다. 정부의 대응 동향

- 과거 1970년대에는 법률(Oil Conservation and Control Ordinance, Cap. 264)상 2개의 위원회(Oil Policy Committee 및 Oil Distribution Committee)를 구성, 석유의 공급·유통·소비 등을 정부에서 직접 통제.
- 그러나 현재는 1970년대와 달리 석유 의존도가 낮아(예, 발전용 연료로서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등 사용 가능) 과거와 같은 강력한 통제는 불필요하다고 인식.
 - 1982년부터 석유회사 및 가스회사는 정부와의 자율적 규약에 따라 전년도 수입량을 기준으로 30일분의 유류(초저유황 디젤유 및 산업용 디젤유 등) 및 나프타를 비축. 석유회사 및 가스회사는 매주 유류 및 나프타 재고량을 정부에 보고.
 -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 강제 시행 : 홍콩정부는 1995년부터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를 실시중. 강제성 없이 민간부문에 대해 에너지 절약 필요성 홍보 및 자발적 참여 유도에 중점.
- 환경운수장관은 5월 9일에 현행 에너지효율표시제를 단계적으로 강제 실시할

- 계획이라고 발표.
- 첫단계로 홍콩 전체 전기소비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냉장고, 에어컨 및 형광등 등 3개 제품에 대해 강제 실시.
 - 동 제도의 강제 시행으로 향후 매년 1.5억 kilowatt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 에너지효율대상 시상: 홍콩은 처음으로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과 “학교 건물”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에너지효율대상을 선정·시상.
- 에너지효율 경진대회에는 총 230개 기관이 참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지난 2004년 12월~2005년 11월 기간동안 에너지절약에 크게 기여한 2개 건물이 선정됨(산업자원부 해외상무관 보고자료).

러시아 가스프롬, 2005년도 순이익 49% 증가 시현

-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은 IFRS(국제회계기준)에 의한 2005년 그룹 전체 순이익이 2004년(2,117.4억 루블) 대비 49% 증가해 3,111.25억 루블에 달했다고 7월 7일 밝힘. 판매수입은 42% 증가해 1,383조 루블에 달했는데 이는 전망치인 1,37조 루블보다 높은 액수임. 그러나, 이는 많은 투자회사들이 분석한 전망치인 3,467억 루블에 약간 못미치는 액수임.
- 2005년도 가스프롬의 천연가스의 판매수입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1,037조 루블에 달함. 이중 대유럽 천연가스 판매수입은 38% 증가한 6,190.9억 루블을 기록했으며 판매된 가스량은 2% 증가.
 - CIS 국가들에 대한 천연가스 판매수입은 58% 증가한 1,083.91억 루블임.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지하가스 저장고로부터 판매된 가스도 포함.
 - 이처럼 CIS 국가들에 대한 가스 판매수입이 대폭 증가된 원인으로는 가스량 판매가 17%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 국가들에 대한 가스가격

인상이 주 원인인 것으로 풀이.

- 한편, 러시아 국내 천연가스 판매수입은 24% 증가해 3,099.85억 루블에 달했으며 판매수입 증가의 주원인은 러시아연방 관세청의 평균 국내 가스가격 인상에 기인.
 - 가스 콘덴세이트, 석유 및 가스제품의 판매는 75% 증가했으며 2004년에 비해 금년 석유 및 가스제품에 대한 시장가격의 상승이 원인이었음.
 - 시브네프츠의 인수 결과, 원유 판매수입은 385.91억 루블에 달했으며 운송비는 30% 증가한 9,295.61억 루블로 증가. 수익세는 전년대비 68% 증가한 1,341.84억 루블로 증가.
- 세계 최대가스회사 가스프롬의 수권자본은 1,183.67억 루블로 보통주는 23,673,512,900주이며 주당 액면가는 5루블임. 가스프롬은 2005년도에 가스 5,479억m³, 석유 1,200만톤을 생산함.

러시아, 에너지자원 저가 수출 없을 듯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외국 파트너들에게 더 이상 러시아의 에너지자원을 싼 값으로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7월 6일 밝힘.
 - 푸틴 대통령은 금년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가스공급 가격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때 유럽으로의 가스공급을 감축시킨 것은 우크라이나였지 러시아가 아니었다고 강조.
 - 그는 “우크라이나와의 가스협상에서 얻어진 주요 결과는 양측이 가스가격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행정적 방법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석유제품 가격변동을 기반으로 가스가격을 책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함.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지난 15년 동안 싼 값으로 이웃국가들에게 가스를 제공했으며 이는 매년 30~50억 달러의 실질적인 경제원조를 제공한 셈이

다라고 주장.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우리의 파트너들과 가스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오랫동안 협상을 지속해 왔음.

- 2005년 초에 유센코 대통령과 이에 대해 합의했으나 실질적으로 실행되지는 못하였고 이것이 우리가 공급을 중단하게 된 이유이라고 주장. 그 후 우크라이나는 유럽으로 공급되는 수출 파이프라인으로부터 가스를 불법유출함으로써 유럽소비자들에 대한 가스공급량 감축을 유발시켜 유럽소비자들에 가스공급을 제한한 것은 러시아가 아니었다고 설명.

- 푸틴 대통령은 현재 유럽으로의 러시아산 가스공급 상황은 과거보다 보다 안정되어 있으며 유럽은 가스공급이 중단되거나 감축될 것에 대해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함. 또한 러시아는 40년 이상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해왔으며 1990년대초 러시아 국내정치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의 에너지공급은 하루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고 말함.
- 푸틴 대통령은 향후 가스가격 책정시 ‘전년도 시장가격의 가중평균 계수 + 가솔린 가격 가중평균 + 연료유 가격 가중평균’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이 모든 것은 시장에 의해 조정되며 모스크바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중국, 고유가 불구에도 에너지 수입량 증가 지속

-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석유수요는 지속적인 증가를 기록함. 5월 중국의 원유 순수입량은 1,228만 톤으로 월간 최대 수입량을 기록. 1~5월 원유 순수입량은 5,900만 톤에 달함. 그리고 5월 원유 수입량은 4월 1,202.53만 톤에서 증가한 1,239.35만 톤에 이르렀으며, 1~5월간 누계 수입량은 6,154.78만 톤에 달함.

- 중국의 5월 원유 생산량 역시 1,572만 톤을 기록하여 월간 최대 산유량을 보였다는 것임. 전문가들은 비록 5월에 생산량이 증가하긴 했지만, 1~5월간 누계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2%밖에 오르지 않았으며, 이 증가율은 정유공장의 정제량 증가율보다 훨씬 낮은 것이라고 지적.
- 5월 국내 정유공장의 원유 정제량은 2,521.45만 톤에 달하여 월간 최대 정제량을 기록. 1~5월 원유 정제량은 2005년 동 기간 대비 4.6% 증가한 12,387만 톤이었음.
- 전문가들은 수입량과 가격이 같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하여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와 중국당국의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엄격한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함.
- 원유의 수입량과 가격이 함께 증가하면서 석유제품의 수입량도 증대되었음. 중국 정부는 5월 국내석유제품 가격을 상향 조정한바 있으나 여전히 국제가격과 톤당 천 위안 정도 차이가 남. 운송연료와 석유화학원료의 공급부족은 석유제품 특히 항공유와 나프타의 수입량을 대폭 증대시켰고, 수출량은 감소.
- 세관통계에 의하면 5월 석유제품 순수입량은 38.5% 증가한 885만 톤에 달함. 전문가들은 여객·화물 운송량의 항공운행이 증가되어 항공유의 수요가 증가되었다고 말함. 동시에 국내정유공장이 경유생산 증대에 힘쓰고 있어 상대적으로 항공유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음.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5월 동안 경유 생산량은 6.3%의 증대를 보였으나, 국내 등유 생산량은 2.9% 감소한 405만 톤에 이르렀음.
- 항공유가 국내 총 등유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항공유의 공급부족은 수입으로 충당. 5개월간 항공유의 수입량은 191.58만 톤으로 2005년 동기 대비 84% 증가.

일본 자민당, 에너지절약 의무화 『그린계약법안』 입법 방침

- 일본 집권 자민당은 정부가 전력이나 공용차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물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때 가격은 물론 에너지 절약도 고려토록 의무화한 '환경 배려계약(그린계약)법안'을 발표. 동 법률안은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비용 감축을 목표로 하며 연말에 입법화할 방침.
-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업자와 계약하고 있음. 그러나 입찰가가 낮아도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으면 오히려 감축 비용이 더 들어감.
- 이런 이유로 그린계약법은 가격뿐 아니라 구입 후 들게 될 연료비나 온실가스의 감축비 등도 사전에 계산해 종합평가 단계에서 계약을 맺도록 중앙정부에 의무화하며 지자체에도 이를 촉구할 방침.
- 전력을 구입할 경우, 천연가스나 석유 등으로 전력 생산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비용을 계산, 이를 전기료에 가산해 계약처를 선정함. OA기기나 공용차 등 내구소비재 구입시에도 전기료나 연료비 등 유지비를 고려함.
- 일본 정부는 1개년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보증하는 사업자에 한해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회계법상의 특례조치를 받도록 성령(省令)도 개정할 예정임. 또한, 청사나 관련시설의 광열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에 관한 조언 등을 제공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계약하는 특례도 허용 방침.

일본 도쿄전력, 업무용 건물 에너지절약 지원 확대

- 일본 도쿄(東京)전력이 일반가정이나 중소 빌딩 및 점포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를 감축키 위해 실시중인 에너지 절약 지원책 'ECO 서포트 플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동 제도는 에너지를 절약한 가정이나 사업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작. 실시 2년째인 지난 해에는 실시 건수에서 전년보다 81% 증가한 2만 1,020건으로 거의 2배가 늘었고 CO₂ 감축량은 52% 증가한 1만 7,300톤 가량이었음.

- ECO 서포트 플랜은 CO₂ 감축대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가정이나 상업부문을 지원할 목적으로 계획된 바 있음.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CO₂ 배출량이 적은 전기온수기 ‘에코큐트(Ecocute)’를 도입한 세대에 1대당 5000엔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 개수공사를 실시한 중소기업자의 경우에는 개수공사에 의한 CO₂ 감축량 1톤당 600엔을 5년간 매년 지급하는 시스템임.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이 계획에 따른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또한, 도쿄전력은 이 계획에 의해 지급된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의 자금을 삼림보전 활동 등에 별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함. 표준적인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CO₂는 연간 5,500kg 가량으로 에코큐트를 도입할 경우 500kg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함.
- 동 제도의 실시 초년도에는 가정에서 1만 1,499건, 사업자에서 94건을 실시해 1만 1,400톤의 CO₂를 감축함. 지난해에는 가정에서 2만 824건, 사업자에서 196건으로 늘었음. 지난 2년간 실시 건수는 총 3만 2,613건, 감축량은 2만 9,000톤이었고 이와 관련해 지급된 도쿄전력의 자금은 2억 엔가량이었음. 올해는 가정에서 3만 건, 사업자에서 2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편, 삼림보전에 대한 지원은 삼림 정비를 통해 CO₂의 흡수량을 늘리는 것이 목적임. 1세대당 지원액인 5000엔을 삼림 정비에 사용함으로써 CO₂ 흡수량이 연 100kg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미국, 일본 및 프랑스, 중국 원전 4기 건설 수주 경쟁 치열

-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에서 총 800억 엔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주 경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중국 정부에 의해 선정될 사업자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H)와 프랑스의 아레바(Areva) 등 2개사로 좁혀졌지만, 일본의 도시바(東芝)가 지난 2월 웨스팅하우스를 인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중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됨.
- 입찰 대상은 중국 광둥(廣東)성 산먼(三門)발전소와 쓰촨(四川)성 양장(陽光)발전소의 100만kW급 원전 4기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12월 사업자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측은 입찰 기한을 내년 8월말로 연기한다고 통보함.
- 입찰에는 러시아 기업을 포함한 3개사가 참여했으나, 사실상 경합을 벌이고 있는 기업은 가압 경수로형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의 2개사임.
-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한 원자력 관련 플랜트 생산 특허는 실제로 이 회사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미츠비시(三菱)중공업이 갖고 있음. 웨스팅하우스가 수주에 성공하면 미츠비시중공업이 주기기를 납품하게 되어 있음.
- 지난 해 봄 반일시위 이후 중국에서 일본기업의 낙찰에 반대하는 의견이 계속되자 미츠비시중공업은 중국 정부관계자로부터 “웨스팅하우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일본은 나서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중국측의 배려는 도시바의 웨스팅하우스 인수로 무효가 된 바 있음.
- 한편 사업자 선정권을 쥐고 있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장궈바오(張國寶) 부위원장은 사업자 선정이 연기된 데에 대해 “사업금액이 워낙 대규모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힘.

연구원 동정

1. 국제회의 공동개최

- ▣ 『Ais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 : The REDGTF Project Review Team Meeting』개최
 - 주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 산업자원부 · 에너지관리공단
 - 기간 : 7월 24(월) ~ 7월 25(화)
 -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전문가 14명 참석
 - 주요 내용 : 관련 국가의 재생에너지 및 분산전원 보급 프로젝트 평가
 - 장소 : 에너지경제연구원

2. 국내 전문가회의 주제발표

- ▣ “Energy Profile and Policy in Korea” 강의(류지철, 7/26, 중앙공무원교육원 주관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교육과정)

3. 주요행사

-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워크숍 개최
 - 주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 일시 : 7월 20일(목), 09:00 ~ 18:00
 - 장소 : 에너지경제연구원
- ▣ 『열요금 연료비연동제 개선방안 공청회』개최
 - 주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 일시 : 7월 18일(화), 15:00 ~ 17:10
 - 장소 : 에너지경제연구원

회원 제도 안내

구 분	제공 자료 (발행주기)	특기사항
일반 회원 (국내)	· Energy Insights (격주간) · 에너지통계월보 (월간) · 에너지 포커스 (월간) · 에너지통계연보 (연간)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연간) · Korea Energy Review Monthly (KERM) (월간) · Energy Info. Korea (연간)	·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주요학술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초청 · 에너지 및 자원분야 의문사항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 소개
일반 회원 (국외)	· Energy Insights (격주간) · Korea Energy Review Monthly (KERM) (월간) · Korea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연간) · Energy Info. Korea (연간) · 기타 영문보고서 (부정기)	해외 현지 배포
에너지 포럼 회원 (국내)	· Energy Insights (격주간) · 에너지통계월보 (월간) · 에너지 포커스 (월간) · 에너지수요전망보고서 (분기) · 에너지통계연보 (연간) · 정책연구보고서 (연간)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연간) · 국가에너지기본계획보고서 (5년) · 세미나 자료 (부정기) · Korea Energy Review Monthly (KERM) (월간) · Northeast Asia Energy Focus (격월간) · Energy Info. Korea (연간)	· 에너지경제연구원 인터넷포럼 회원 전용 자료실을 통한 에너지 및 자원정보 제공 (회원전용 ID 및 Pass Word 부여) ·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주요학술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초청 · 에너지 및 자원분야 의문사항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소개

■ 가입 문의 : 교육홍보팀 (031-420-2126)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발행인 : 방기열, 편집인 : 이복재
Tel) 031-420-2210, Fax) 031-421-0536
<http://www.keei.re.kr>

